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상품의 명칭 : 365 가족안심상해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보험목적 보장시 해당 개별 특약에 보험의 목적을 명기한다.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2회납, 4회납, 12회납으로 할 수 있다.

다. 가입연령 : 제한없음.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하지 아니한다.

라.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바.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사. 모집의 제한 : 동 보험은 통신판매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아. 판매의 제한 : 2010년 4월 1일부터 신규 계약은 판매 중지(단, 이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중 동 상품의 자동갱신 특별약관 적용 계약은 예외로 함)

자. 보험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차.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